

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

의안번호	제56호
의결년월일	98. 10. 28 (제65회)

제안년월일 : 1998. 10. 27

제 안 자 : 행정복지위원장

○ 1998년 10월 27일 제6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임.

감 사 대 상 기 관	성격 및 근거	감 사 사 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• 혜립원 • 성가요양원 • 사회복지관(6개소) • 노인복지회관(2개소) • 시립어린이집(13개소) • 부천문화의집 • 세소망소년의 집 • 새마을금고중앙회부천시지부 (부천시세마을이동도서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 •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제1항제5호 •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제1항제4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산운영의 효율적 집행 여부 •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성과 여부